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6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비영리사업인 ‘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’를 운영하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용산구 백범로99길 40, 209호, 211호(한강로 2가,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)
- 사용자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51.70㎡, 전용면적 447.71㎡
- 사용허가 기간 : 2023.5.11. ~ 2027.12.31.(약4년8개월)
- 예상 감면액 : 316,173천원(월 5,710천원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증가와 내실있는 관리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인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를 SH공사와 위수탁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.

-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는 SH공사의 비영리 사업으로 서울시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및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제5항 3.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전략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 김대욱 (☎2133-6299)